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purplekj@korea.kr

ㅇ 팩스 : 042-481-46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7-337호

「문화재보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경상북도 영양군 소재 「영양 한양조씨 사월 종택」을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로 다음과 같이 지정 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9일

문 화 재 청 장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예고(영양 한양조씨 사월 종택)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예고(영양 한양조씨 사월 종택)

가. 문화재명 : 영양 한양조씨 사월 종택(英陽 漢陽趙氏 沙月宗宅, Sawol Head House of the Hanyang Jo Clan, Yeongyang)

※ 현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52호「영양 월담헌과 사월 종택」

나. 소 재 지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원당길 2-1 (하원리 205-1)

다. 시 대 : 조선시대

라. 소 유 자 : 조준길

마 수 량 : 일곽(건물 3동, 토지 3,615.03㎡<6필지>)

ㅇ 건축물 지정 : 3동

명 칭		시 대	구조/형식/형태	크기/수량	소유자
영양 한양조씨 사월종택	본채	조선시대	목구조 5량가, 정면5칸×측면5칸, ㄱ자형, 와가	154.24㎡	조준길
	사당	조선시대	목구조 3량가, 정면3칸×측면1칸, 一자형, 와가	20.56㎡	조준길
	방앗간채	조선시대	목구조 3량가, 정면3칸×측면1칸, 一자형, 초가	19.44㎡	조준길
계				194.24㎡	

ㅇ 토지 지정 면적 : 3,615.03㎡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지정(㎡)	소유자
영양군 영양읍 하원리	109-2	전	1,531.0	1,531.0	조준길
영양군 영양읍 하원리	109-8	전	106.0	106.0	조준길
영양군 영양읍 하원리	109-9	전	162.0	162.0	조준길
영양군 영양읍 하원리	110	대	245.0	245.0	조준길
영양군 영양읍 하원리	205-1	대	1,867.0	1,510.30	조준길
영양군 영양읍 하원리	347	도	5,043.0	60.73	국(국토교통부)
계			8,954	3,615.03	

2. 지정예고 사유

가. 「영양 한양조씨 사월 종택」은 영양에 처음 입향한 조원(趙源, 1511-?)의 손자 조임(趙任, 1573-1644)이 1602년 건립한 것으로 전해지며, 북쪽의 야산을 뒤로하고 남쪽으로는 반변천과 농경지를 바라보고 있는 배산임수의 형국을 이룸

나. 고택은 'ㅁ'자형 본채와 좌측의 방앗간채, 우측 후면에 별도의 영역을 이룬 사당으로 구성됨. 특히 본채는 경북지역 상류 주택의 보편적인 특징으로 보이는 'ㅁ'자형의 공간구성을 취하고 있으나, 안채와 사랑채의 연결방식이 다른 방식을 보이고 있음. 이것은 사랑채가 안채로부터 분화되어 가는 과도기적인 모습으로서 중요한 건축적 특징이라 할 수 있음

다. 또한 영덕 충효당 종택(국가민속문화재 제168호), 영덕 무안박씨 무의공파 종택(국가민속문화재 제286호) 등에서 이와 유사한 형태를 볼 수 있는데, 한양조씨 사월종가 가문이 영덕 지방의 가문들과 혼맥으로 연결되어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주택의 평면형태가 지역적인 특징과 더불어 혼인관계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되어 짐

라. 건립연대가 비교적 이르며, 건립과 중수 등의 기록을 알 수 있는 문헌과 편액 등 관련 기록이 비교적 잘 남아 있고, 고택의 보존 상태도 양호함. 조임의 사월문집책판이 타 문중의 책판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종가의 중요한 의례인 제례는 4대 봉사와 명절제사, 묘사 등이 그대로 전승되고 있음. 이와 같이 사월종택은 종가가 갖는 역사·문화적인 현상과 변화상을 찾아 볼 수 있는 유·무형의 자료가 어느 정도 전승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역사성 · 학술성의 요건을 갖추어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음

3. 지정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경상북도 문화유산과, 영양군청 문화관광과) 또는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7 / 팩스 042-481-489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3179

- 주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문화유산과

○ 영양군청 문화관광과 : 전화 054-680-6421 / 팩스 054-680-6419

- 주소 : (우 36239)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37, 영양군청 문화관광과

7. 국가지정문화재(민속문화재) 지정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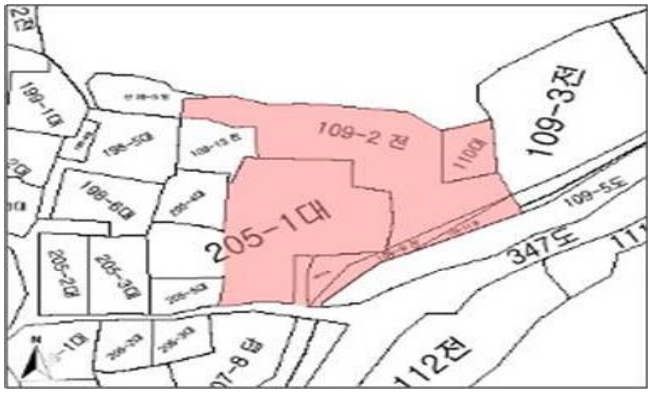
○ 영양 한양조씨 사월 종택